

제422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27일(목)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0)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상정된 안건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1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1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0) 1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 2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2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2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2

(17시26분 개의)

○소위원장 임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6)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0)

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
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8)
6.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7.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 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생활체육진흥법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소위 자료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따른 책임소재 변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정안은 학교시설의 설치나 보존 외의 시설 개방 운영상 사고에 대해서 사립학교의 점유자인 학교장과 소유자인 학교법인에 대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학교-관리주체 간 이용계약에 따라서 관리주체에게 민법상 배상책임을 이전하고 학교장은 국공립, 사립 모두 동일하게 면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이용계약에 따라서 약간의 시설 보존의 하자 책임도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3쪽, 검토보고 등의 요지를 설명드리면 아래 가운데 표를 보시면 현행법상 학교체육시설 개방 결정의 주체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서 국립학교는 학교장의 결정으로 직접 돼 있고 공·사립학교의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모든 교육규칙에서는 학교장이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의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타당하여 보입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4쪽입니다, 개방 대상에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인 초중고가 아닌 대학교는 제외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면책조항에서 사립학교에게만 적용되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면책만을 규정하는 것 대신에 국공립·사립학교 무관 모든 학교장이 법령상 조건을 갖춘 경우 민사상 책임이 면책됨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체부 의견은 문체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들으시면 되겠는데 일단 수정의견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교육부 의견과 법무부 의견의 경우도 관련 협의를 직접 진행한 문체부로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 8월 소위에서는 이용주체나 학교 범위, 이용방식, 책임주체, 심사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7쪽, 조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조 제1항의 경우 수정의견으로 개방 대상에서 대학교를 제외하고 이용주체를 주민 등으로 확대하며 개방 대상 시설을 학교생활체육시설로 특정하고 단서에 개방하지 않을 사유, 미개방의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다음 8쪽, 2항 미개방 관련 세부사항과 3항 이용 제한 거부 관련 세부사항은 삭제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쪽, 개정안 제4항, 수정의견 2항은 학교생활체육시설, 주민 등 용어를 반영하여 자구 수정한 내용이고 수정의견 제3항의 경우는 학교생활체육시설의 개방·이용을 위해 학교장과 관리주체 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다수 학교에서 지방체육회라든가 스포츠클럽 등과 시설사용 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자료1을 보시면 자세한 사항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협약서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제5항의 경우는 학교생활체육시설 자구 반영과 생활체육시설로의 이용 중 발생 사고에 대해서 법령 준수 등 조건부로 학교장 등의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입니다.

참고자료3을 보시면 민·형사상 책임 면제 관련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제6항은 이미 설치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가 개정안의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시설의 설치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미란**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또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다양한 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정 내용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학교장에 대한 면책규정은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학교체육시설 관리주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여 수정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생활체육시설로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인과 전문체육인들을 여기서 나누게 되면 더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생활 자를 좀 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정부 측에서는 수용하는 부분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미란** 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지금 학교체육시설로 가자라는 겁니다, 학교생활체육시설이 아니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년 8월 28일 날 강수상 체육국장님에게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문체부 대안을 잘 준비해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부분 더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강수상** 지금 법안 다 저희가 설명을 일부 드린 부분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법무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고요, 교육부에서도 전체적인 데에서는 또 공감을 했고요. 단지 이 법이 적용되면 현장에 있는 교육감들의 의견수렴이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체부가 지금 먼저 앞서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사안이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래서 지금 현장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우리 문체부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협약서요, 이 협약서를……

체육회라고 하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체육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이게 기초단체 체육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클럽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랑 계약을 맺는 주체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협약서가 필요할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필요한 시설의……

○민형배 위원 체육회가 일괄적으로 학교와 협약을 맺어 놓으면 될 터이고, 특히 이것을 학교장하고 일일이 협약을 맺으려면 그 과정도 학교마다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지도 모르고.

협약을 맺는 주체와 협약의 대상이 되는 시설과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장과 지자체장이 뭔가 체계적으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둬야, 안 그러면 클럽마다 맺으면요 한 학교에 몇 개가 될 거고, 한 기초지자체에 학교가 막 80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우려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약의 상대나 계약의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중구난방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학교시설의 주체가 아니라 학교장에게 그 책임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관련된 계약의 주체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각각의 클럽들이 한꺼번에 계약하는 여러 가지 다중계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마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것을 잘해야 이게 현장에서 혼선이 없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자체장을 해 보면 체육시설 중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이용을 규정하는 협약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접근이 되도록 뭔가 하여튼 단위 설정을 잘해 줘야 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무리 교장이 책임자라고 해도 실제로 그 시설의 주인은 교장이 아닙니다. 교육청이거든요. 관리주체가 교장일 뿐이지 시설 소유자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지자체장 혹은 체육회장 간에 한달지 뭔가 기초적인 이걸 맺어 놓고 학교 상황에

따라서 그걸 각각 현지화, 커스터마이즈하는 그 과정만 필요하도록 체계를 잘 잡아 놓으셔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민형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초·중등교육법,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유사한 법은 현재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해서 현실적으로 전국의 많은 학교체육시설들이 개방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주체 지정, 학교장 면책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입법이 불비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법을 문제부하고 상의해서 발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수현 위원 박수현입니다.

하여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학교장의 면책규정을 신설하고 관리주체 간의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수정안, 그리고 개방 대상을 주민에서 주민 등으로 확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한 혼적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다만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다 그러면 학교 개방이 더욱 확대될 텐데 이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현재 문제부에서는 관리매니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소위 자료 19페이지의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문체부), 관리매니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이것 보니까, 그 밑의 표를 보니까 지원 학교 수가 2018년에 155개, 2019년에 168개로 정점을 찍고 2020년부터 156개, 21년 155, 22년 150 그다가 2023, 24년에 120개로 급감하고 있어요.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법에 따라서 학교 개방이 확대될 때 오히려 지금 현재 흐름과 역행하고 있는 미스매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24년에 120개, 23년에 120개인데요 25년은 저희가 200개로 좀 늘린 부분들이 있고요.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인데 위원님께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에 매니저가 파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용 과정에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위험요소가 없도록 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아까 민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격한 기준하에 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의 요건이라든지 자격조건들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25년에는 200개교로 늘려서 예산 신청을 한 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저희가 200개교로 신청을 해서 올해는 200개교를 지원하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충남에는 몇 개교 정도 지원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충남에는 15개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중에 교육의 도시로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는 공주·부여·청양에 한 군데가 없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자세히 좀 균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강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관광진흥법 최보윤 의원안 주요 내용은,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무장애 관광을 정의하고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현행법은 관광활동이나 관광복지 지원 대상을 장애인 또는 고령자, 다자녀가구 또는 관광취약계층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무장애 관광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쪽입니다.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의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관광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개념으로 접근 가능한 관광, 포용적 관광, 모두를 위한 관광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무장애 관광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 등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관광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하단, 다만 동법을 비롯하여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 관련 법령에 무장애 관광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에 정의규정을 별도로 추가하여 신설하고 추진 사업의 내용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때는 이 법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관광기본법 최보윤 의원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개정안 7호의 괄호 부분이 정의 내용인데 괄호 부분 정의는 4쪽 제2조제13호, 정의규정의 13호로 별도로 들어내서 심사를 하고 괄호 외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되 연관성이 높은, 개정안처럼 7호가 아니라 4호와 연관성이 높다고 봐서 4호의2로 재배치하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무장애 관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무장애 관광의 법적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일부 수정과 정의규정 신설이 필요하여 수정 수용입니다.

○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재원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례에서 쓰고 있다고 하여 법에 근거가 없는데 그냥 써도 되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기 때문에 수정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임오경 저는 정부 측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문체부는 관광 분야 외에 문화·예술·체육 분야에도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무장애 활동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좀 파악하셔서 일체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장애 관광에 관련된 정의가 나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좀 일제히 정비를 하셔서 정부안이든 아니면 우리 문체부 위원님들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 좀 이것을 다 요약해서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미란 예,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완희 관광기본법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는 관광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저소득층 등의 관광활동(무장애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문대림 의원안과 최보윤 의원안이고, 두 번째는 관광진흥기본계획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 등 업무종사자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문대림 의원안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광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저소득층 등 관광활동(무장애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대림 의원안은 관광활동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로 명시하고 있고 최보윤 의원안은 명시적인 한정 대신에 포괄적인 무장애 관광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장애 관광의 정의를 앞선 관광진흥법 논의에서 이미 규정하였으므로 문대림 의원안과 최보윤 의원안을 통합하여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체계·자구를 정비하는 수정의견입니다.

두 번째, 관광진흥계획에 경찰·소방공무원, 교원 등 업무종사자 관광활동 지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이미 복지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 교육부나 문체부 등 담당 부처에서도 우려사항이 있어서 삭제하는 의견의 수정의견입니다.

한편 이 법안과 관련해서 지난번 소위 심사에서는 무장애 관광의 개념 정리, 무장애

관광 지원 관련 규정의 형식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 6쪽인데 먼저 4쪽 최보윤 의원안의 2의2 괄호 정의 부분은 관광진흥법에서 정의를 두었으므로 삭제하고, 그리고 지원 대상은 뒤의 6쪽 문대림 의원안에서 죽 나열한 관광약자를 관광취약계층으로 일괄 포함하여 통합한 후 최보윤 의원안과 문대림 의원안 2개를 포함한 3호의2,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은 연관성 있는 3호의2로 뒤에 재배치하는 수정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 10호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서 국민의 관광 기본권을 적극 보장하려는 개정안 모두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규정은 법문의 형식과 조문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종사자에 대한 관광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수정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원 위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배현진 위원** 앞에 조금 전에 처리한 최보윤 의원의 무장애 관광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문대림 의원안과 2개를 병합하면서, 문대림 의원안은 그 대상을 굉장히 구체화시키셨잖아요. 그렇지요? 저소득층, 임산부, 고령자 등등 해서 이렇게 구체화시키셨는데 이게 지금 ‘지원한다’가 그냥 포괄적으로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이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문체부가 어떤 방식의 구상을 가지고 답을 주신 겁니까? 제가 좀 이게 헷갈리네요.

노인, 장애인, 어린이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무장애 관광 하면 시설적인 면을 생각 할 거고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경찰·소방공무원 등등에 가면 관광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할 테고, 이런 게 다 포괄되는 개념인가요, 이게 원래?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박미경** 관광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말씀하셨던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안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유아 등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조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식 개선 그리고 무장애 관광 활동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 그리고 투어케어 인력 등 모두 포괄적인 사항을 말하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현진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문대림 의원님도 구체화시켜서 법안을 만드신 취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저희가 병합해서 심사를 해서 법안을 하게 되면 문 의원님의 법안 취지도 문체부에서 정책으로 살릴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가능한 거지요? 제가 잘 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박미경** 예. 정책 대상이 겹치기 때문에 두 분의 입법취

지는 동일하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지금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주신 전문위원 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배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최보윤 의원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고령자, 관광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장애인 등에 대한 관광 접근성·편의성 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수정의견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맨 아래 동그라미입니다.

개정안에 기금 사업의 수혜자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현행법 제5조제3항제8호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으로 소외계층이 동일하므로 8호의2를 신설하는 대신에 8호에 통합하되, 앞서 관광진흥법 논의에서 무장애 관광의 정의규정이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개정안의 사업 내용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으로 포괄하여 수정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으며, 소외계층이라는 용어 대신에 현행법에 맞게 관광취약계층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문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의 8호의2를 현행 8호에 통합 반영하되 소외계층은 관광취약계층으로, 교통·편의시설 설치 지역이 개정안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한정하지 않는 게 입법취지를 더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한정하지 않고, 현행 8호의 '국민관광 복지사업'이라는 문구를 관광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관광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교통 및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소외계층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취약계층으로 수정하면 일관성 있는 법 해석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 대상지를 관광지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로 한정하기보다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일반화하고 용어와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박수현입니다.

그동안 제가 상임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바로 이 관광취약계층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고요. 또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열린관광지 운영 부실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오늘 이 문제를 그 문제와 잘 연계해서 함께 좀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 제가 이 수정의견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 주고 싶은 것은 사업 대상지를 관광지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려고 하는 정부 측의 수정 노력에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런 정도로 이 문제는 좀 적극적인, 저도 위원으로서 찬성 의견을 내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찬성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저도 한 말씀 드리게 되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 자구 이 부분이 또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법률을 파악하셔야 될 문체부의 역할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외계층에서 관광취약계층으로 수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법을 보게 되면 모든 법이 자구에 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일괄적으로 좀 찾아내어서 정부 차원으로 법률을 좀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2건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 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완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의 소위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수정의견 및 정부 의견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안 제2조 정의규정에서는 치유관광의 정의에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그리고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에는 맨발걷기길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8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3조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의무규정 대신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9쪽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등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초단체가 아니므로 등록권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그다음에 10쪽 오른쪽 하단 기재부 의견인데요, 전문인력 양성기관 대상 비용지원 17조, 재정지원 18조, 그리고 11쪽의 안 제22조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에 대한 지원 사항은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기금 사업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하단 과태료에서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에 대한 허위 표시는 개정안 과태료 금액 500만 원을 다른 유사 법률에 맞추어 100만 원 이하로 수정하

는 내용입니다.

다음, 12쪽 보시면 지난 11월 2차 소위에서는 치유관광사업자 지원·등록 등 구체적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허위 표시 벌칙, 정부의 준비 상황 부족, 관광진흥법 개정 필요성 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13쪽 이하 조문별 검토는 위원님들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총괄적인 지원체계를 통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전문위원과 관계 부처 의견 그리고 관광진흥법 등 기존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치유관광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인증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등 일부 문구를 수정 보완 할 필요가 있어 수정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 이 법을 제정하게 되면 관련 법을 몇 가지나 어디를 어떻게 손을 봐야 되나요? 다른 법과 연계해서 개정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나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입니다.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저희 문체부와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좀 더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이 법하고 연계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타법과 관련해서는 그 법을 먼저 적용한다고 제4조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타법은 지금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게 특별법도 아닌데 우선한다고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아니, 제가 잘못…… 그 법들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관광진흥법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거나 개정해 줘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민형배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가 아니고 검토하셨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 내용을 좀 줘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구체적으로 저희가 문건으로 있지는 않고요.

제가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민형배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를 들어 저희가 이번의 치유법 같은 경우에 관광진흥법 외의 단독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 문체부에 국제회의산업법이 있습니다. MICE와 관련된 법인데요, 이 법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그 법만으로도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했는데도 이게 관광진흥법이나 아니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게 더 적정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그 부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 없네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입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형배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관광진흥법에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용도와 관련된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형배 위원 기금의 용도 부분만 좀 손보면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용도에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에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해서 혹시 규명이 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렇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나머지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북도나 다른 기재부나 이런 데 연관해서 더 보완하거나 손봐야 될 건 없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됐다는 거지요, 이 단독법으로서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관광진흥법의 기금 관련된 부분만 손보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것도 법은 아니고 아마 시행령을 손보면 되나 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그건 시행령에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도 포괄할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민형배 위원 되겠는데요, 그것은 관광사업자 지원 그러면 관광사업자 안에 다 포괄이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것 말고는 없어요, 더 손볼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다만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치유관광사업을 통한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치유관광사업을 할 수 없음이라고 물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치유관광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리베이트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의 불법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방법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의료법인이 자회사 형태로 치유관광사업 행위를 하게 된 경우는 일단 저희는 자생력이 있다고 보고 나중에 지원

사업을 할 때 우선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배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치유관광자원에 대해서 시행령에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혹여나 이게 그런 우려가 있다면 시행령에 의료 부분하고 확실히 구분짓는 조항을 담아서 차제에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제가 관련 법을 충분히 다 살펴보지 못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나 혹은 숙박 같은 시설과 관련된 것이나 그런 관련된 법안이나 계획 이런 데에 아마 이게 연관돼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검토했단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말씀드리면 이것은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신설 형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지구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은……

○민형배 위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충돌은 없다고 봅니다.

○박수현 위원 한 가지 질문으로 확인 좀 해 볼게요.

이 법 말고 이 관련 분야에 어떤 중복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좀 많이 있었나요?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관 김근호 저희 법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자원과 관련 법이 있고요. 그리고……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다른 법률과의 중복 문제를 많이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됐을 때 중복이 되는데도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정안에 보니까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을 해 온 것을 보아서 제가 걱정했던 지원의 중복 가능성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는 됐습니다, 되었고.

지금 이게 김윤덕 의원님과 배현진 의원님 안인데 이런 의문들이, 질문들이 해소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병합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발의하신 의원님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의원님들 다……

우선 말씀드리면 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산림치유라든지 해양치유, 농업치유 같은 경우는 저희 이 법하고는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타법의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하고 관리하고 연구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저희 치유관광법은 그런 자원들을 패키지 관광상품화하고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되게 하는 관광진흥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이게 개념적 혼란이 좀 있어서요.

치유관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해양치유, 산림치유가 있으면 이 셋만 놓고 보면 치유관광, 해양치유, 산림치유가 있으면 산림이나 해양치유가 치유관광의 부분입니까? 부분집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그렇습니다. 거의 8000개의 그런 각각의 자원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게 상품화되고 소비되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을 통해서 상품화하고 소비되게 하는 그런 기능들에 이 법이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오케이.

그러면 관광단지들 막 개발하잖아요. 여기에는 그런 개념은 없는 거네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만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그렇습니다. 관광상품화 지원하고……

○민형배 위원 따라서 치유관광산업지구, 관광단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복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치유관광산업지구 안에 어떤 각 관광단지들이 다 포섭되기도 하고 조금은 부분집합이나 교집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치유관광산업지구는 지정을 하더라도 새로운 관광산업지구를 개발하거나 기존에 있는 인프라 플러스 뭐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기본적으로 이 치유산업이라는 게 자연환경을 주로 활용하는 산업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새로운 어떤 단지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런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된다거나 환경파괴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겠네요?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건 세제 문제는 혹시 충돌하는 것 없습니까? 지원 문제는 아까 설명하셨는데 거꾸로 별도의 세제 변화가 있을 만한 건 없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세청하고 협의를 몇 번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돼서 별도로 그쪽에서 의견을 내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실제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동이 되는 건데요 이게 기본적인 새로운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 감면 그런 이슈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지적보다는 질문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 소위원회 중간에 방송 출연 때문에 자리를 떠서 그 부분을 듣지를 못 했는데 이게 정부 측에서 각 우리 위원들 실에 자세히 설명을, 새로운 개념들로 들리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도 있었고 질책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 설명자료 이건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게 오늘 만들어서 오늘 주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저희가 만든 지는 한 달 가까이 됐고요.

○박수현 위원 의원실에 다 배포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배포를 조금 늦게 하기는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그랬습니다. 배포드렸습니다.

○박수현 위원 언제……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설명도 드리고 배포도 드렸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2주 전부터 저희가 설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박수현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개념이 종합적으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상당한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고로 해 주십시오, 참고로.

뭐냐 하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인 이것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23년에 펴낸 통계를 보면 식도락 관광이 59.8%, 쇼핑이 57.9%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역보다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제정하는 그러한 취지 중 하나,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치유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비수도권 또 중소도시와 농촌 이런 곳에 외래 관광객들을 어떻게 제대로 잘 효과 있게 유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도 이 법이 제정, 통과가 되어야 되어서 실행이 될 때는 문체부로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것을 이 법에 어떻게 담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문체부로서는 굉장히 미리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젠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본 의원실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저도 먼저 와서 궁금한 것은 좀 질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지금 관광진흥법하고 해양치유법, 치유농업법, 산림문화·휴양법에 업종이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지금 소관 업종, 치유관광법에 이중 등록이 가능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리고 새로운 신설 업종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업종들이 치유관광법에 등록하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추가 등록……

○소위원장 임오경 새로운 신설 업종은 아직 계획이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소위원장 임오경 그렇다면 관광진흥법 같은 걸 봤을 때 진흥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촉진 그리고 지원, 장려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광진흥법 하나를 봤을 때는 상당히 별칙…… 과태료는 다 일괄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별칙이 유난히 관광진흥법이 규제가 세요.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타 법안들하고 같이 한번 별칙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치유관광법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고, 그런데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양치유법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치유농업법은 징역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관광진흥법만 유독 이렇게 별칙이 강화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초창기 진흥할 때 여기에 대한 진입장벽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련된 별칙이나 아니면 과태료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중한 면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중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에 등록돼 있는 40여 개 업종이 치유관광법에도 등록을 했을 때 만약에 별칙, 과태료가 나왔을 때 어느 쪽 별칙으로 저희가 받아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사업과장 윤용한 치유관광……

○소위원장 임오경 범칙금이 나왔을 때.

다 업종이 유사,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중 등록이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40여 개 업종 그리고 해양치유법, 치유농업법, 산림문화·휴양법에 현재 있는 업종들이 치유관광법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중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별칙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별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거짓이나 아니면 부정한 행위, 일이 생겼을 때 별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부과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유관광사업을 영위하면서 생긴 부정행위나 아니면, 그러니까 관련된 업종을 행위를 영위…… 당연한 얘기지만 그 업종을 행위하면서 생긴 사안에 대해서 별칙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원화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심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관광진흥법 범칙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범칙금은 7년 이하 징역에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모든, 치유관광법이랑 다른 데 해양치유법, 치유농업법이랑 다 보게 되면 과태료는 또 동일해요, 100만 원으로. 이게 너무나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시행령에 있어서 구체화를 시키실 때 관광진흥법안도 다시 한번 검토도 해 주시고, 또한 분명히 치유관광법에서 이중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셨

고 새로운 업종은 지금 현재로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새로운 업종이 저는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치유관광법의 신설 업종이 저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행령에서 구체화를 좀 더 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떤 뜻인지 알겠고요. 모든 것을 일원화할 수는 없겠지만 완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말씀 없으십니까?

이 법안을 발의한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 정말 제정법을 만드는 게 이렇게 장구한 세월을 요구하는지 이번에 배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정의조항부터 다시 질문이 시작됐는데요. 문체부에 아쉬운 것은,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이게 규정을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바는 제가 익히 알고 있으나 심사하는 위원들께서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범위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저촉되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들을 계속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만 딱 뽑아서 각 의원실에 쉽게 설명을 더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김윤덕 의원님과의 동일한 법안, 실제 맨발걷기길과 전북도 얘기만 들어 봤는데 이 내용도 실은 그 논의 과정에서 이미 다 해소됐었다라는 것을 김윤덕 의원님께 진작에 잘 안내를 해 드렸으면 저희가 이렇게 거의 99.9% 동일한 법안을 한 심사소위에서 동일하게 넘기는 충격은 발생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저도 굉장히 공들여 만든 법안입니다. 때문에, 뒤의 김윤덕 의원님 법안도 처리하겠지만 여야가 합심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해 보지 않은 새로운 관광산업의 어떤 틀을, 특히 저는 지방관광을 살리고자, 같이 하고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배현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제정법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종합적으로 많은 것들을 한번에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만큼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필요했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배현진 위원님 말씀 중에 지방관광의 활성화라고 하는 제정의 목표를 말씀해 주셔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발의 의원님들 의견들이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오늘 그렇게 해서 병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지금 작금의 국내 정국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경제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법으로서 우리가 아직 다 짚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차후에 또 수정해 나가기로 하고, 또 더 디테일한 것은 시행령에 잘 담아 가면서 이런 것들을 보강해 나간다면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예.

마지막으로 아까 이중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정부 측에서. 그렇다면 차후 업체가 각 부처에 이중 지원을 했을 경우 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사업의 목적이 다르면 이중 등록이라고 하더라도 이중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한 목적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이걸 잘 검토하시고 잘 봐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장 윤용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시행령에서 진짜 이걸 디테일하게 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시 한번 정부 측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법안심사 때마다 세부 내용 등 법안의 보완, 이해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심의, 심사 전에 미리 의원실을 찾아가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해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정법을 이틀 전에, 그것도 오후에 와서 보좌진들에게 위원님들이 전달 받는 과정에서는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부 측에 말씀드리지만 주요 법안, 논쟁이 되는 법안에 있어서는 사전에 미리 의원실에 방문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차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2건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장미란 차관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배현진 임오경

○출장 위원(1인)

김승수

○ 청가 위원(1인)

진종오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전완희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미란

체육국장 강수상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